

서울특별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김인제 의원 발의)

의안 번호	756
----------	-----

발 의 년 월 일: 2023년 04월 10일

발 의 자: 김인제 의원(1명)

찬 성 자: 김동욱, 김지향, 박승진, 서준오, 왕정순, 이민옥, 이소라, 이영실, 이용균, 이원형, 이종태, 임종국, 장태용, 최민규, 최재란, 한·신, 홍국표 의원(17명)

1. 제안이유

- 지방자치단체 집행기관 소속 고위공무원과 지방공기업 사장 및 투자·출연·출자기관 등 공공기관의 장에 대한 임용에 있어 공공기관 장으로서 도덕성과 전문성 및 합리적 업무수행 역량을 검증하여 투명하고 공정하게 능력이 검증된 인사가 임용될 수 있도록 인사청문회 제도를 도입하고자 함
- 공정한 인사검증시스템의 일환으로 고위공무원과 투자·출연·출자기관 등 공공기관의 장에 대한 지방의회 차원의 인사청문회 제도를 도입해 능력과 자질이 검증된 사람이 임용됨으로써 결과적으로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 서울특별시의회는 2014년부터 지방의회 인사청문회 도입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의결하여, 지방자치단체 고위공무원과 공기업의 사장 및 투자·출연·출자기관 등 공공기관의 장에 대한 지방의회 차원의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을 촉구함. 이에, 국회는 「지방자치법」을 개정('22.3.21.개정, '23.9.22. 시행)하여 제47조2(인사청문회) 조항을 신설하고 지방의회 인사청문회 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함

- 이에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구성·운영과 인사청문회의 절차·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고위공무원과 투자·출연·출자기관 등 공공기관의 장에 대한 서울특별시의회 인사청문회 제도를 도입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 제정 목적 및 용어 정의(안 제1조~제2조)
- 나.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안 제4조)
- 다. 인사청문 요청안의 심사와 인사청문 절차(안 제5조)
- 라. 인사청문 요청안의 첨부서류 및 회부(안 제6조~제7조)
- 마. 인사청문위원의 질의 (안 제8조)
- 바. 증인 등의 출석요구(안 제9조)
- 사. 위원회의 활동기간 및 경과보고서(안 제10조~제11조)
- 아. 인사청문대상자 등의 보호 및 답변 등의 거부(안 제16조~제17조)
- 자. 위원회의 자료제출요구(안 제13조)
- 차. 과태료의 부과(안 제18조)
- 카. 인사청문위원의 제척과 회피(안 제19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47조의2
-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

서울특별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7조의2에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구성·운영과 인사청문회의 절차·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인사청문대상자”라 함은 「지방자치법」 제47조의2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인사청문이 요청된 사람과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는 부시장 후보로 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인사청문이 요청된 사람을 말한다.
2. “인사청문 요청안”이라 함은 「지방자치법」 제47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직위의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위하여 시장이 의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하는 의안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의무) ① 시장은 「지방자치법」 제47조의2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직위의 후보자와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는 부시장에 대하여 인사청문 요청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방자치법」 제47조의2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직위의 후보자에 대하여 인사청문 요청을 할 수 있다. 단, 후보자의 소관상임위원회 위원장의 인사청문 요구가 있는 때에는 시장은 의회에 인사청문 요청을 하여야 한다.

제4조(인사청문특별위원회) ① 「지방자치법」 47조의2에 따라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인사청문 요청안이 의회에 제출된 때에 구성된 것으로 본다.

② 위원회의 위원정수는 13명 이내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교섭단체 등의 의원수의 비율에 의하여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으로 서울특별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선임 및 개선(改選)한다. 이 경우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은 위원회가 구성된 날부터 3일 이내에 의장에게 위원의 선임을 요청하여야 하며, 이 기한내에 요청이 없는 때에는 의장이 위원을 선임할 수 있다.

④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의 위원선임은 의장이 이를 행한다.

⑤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각 교섭단체별로 부위원장 1인을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⑥ 위원회는 인사청문 요청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 또는 인사청문경과가 본회의에 보고 될 때까지 존속한다.

⑦ 위원회의 행정지원 업무는 인사청문대상자의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 소관 상임위원회가 수행한다.

제5조(인사청문 요청안의 심사 또는 인사청문) ① 위원회의 인사청문 요청안에 대한 심사 또는 인사청문은 「지방자치법」 제47조의2에 따라 인사청문회를 열어, 인사청문대상자를 출석하게 하여 질의를 행하고 답변과 의견을 청취하는 방식으로 한다.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증인·감정인 또는 참고인으로부터 증언·진술을 청취하는 등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제6조(인사청문 요청안의 첨부서류) 시장이 의회에 제출하는 인사청문 요청안에는 요청사유서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직업·학력·경력에 관한 사항
2.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병역신고사항
3. 「공직자윤리법」 제4조에 따른 등록대상 재산에 관한 신고사항
4. 최근 5년간의 소득세·재산세(토지분 및 건축물분을 포함한다)의 납부 및 체납실적에 관한 사항
5. 범죄경력에 관한 사항

제7조(인사청문 요청안의 회부) ① 의장은 인사청문 요청안이 제출된 때에는 즉시 본회의에 보고하고 위원회에 회부하며, 그 심사 또는 인사청문이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하거나 위원장으로 하여금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한다. 다만, 폐회 또는 휴회 등으로 본회의에 보고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생략하고 회부할 수 있다.

② 의회는 인사청문 요청안이 회부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심사 또는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

③ 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기간 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치지 못하여 의회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한 경우에 시장은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하여 줄 것을 의회에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인사청문대상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의회가 송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시장은 인사청문 요청한 자를 임명할 수 있다.

제8조(위원의 질의 등) ① 위원회는 인사청문대상자로부터 선서를 받은 후 10분의 범위내에서 모두(冒頭)발언을 청취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인사청문대상자의 선서는 다음과 같이 한다. “공직후보자인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서합니다.”

③ 위원 1인당 질의시간은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④ 위원회에서의 질의는 1문1답의 방식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일괄질의 등 다른 방식으로 할 수 있다.

⑤ 위원이 인사청문대상자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질의요지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인사청문회 개최 24시간 전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지체없이 질의요지서를 인사청문대상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⑥ 위원은 인사청문대상자에게 서면으로 질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질의서는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위원장은 늦어도 인사청문회 개최 5일 전까지 질의서가 인사청문대상자에게 도달되도록 송부하여야 하며 인사청문대상자는 인사청문회 개최 48시간 전까지 위원장에게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⑦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은 서면답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9조(증인 등의 출석요구) 위원회가 증인·감정인·참고인의 출석요구를 한

때에는 그 출석요구서가 늦어도 출석요구일 5일 전에 송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회의 활동기간 등) ① 위원회는 인사청문 요청안이 회부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치되, 인사청문회의 기간은 3일 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사청문대상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그 기간 이내에 마치지 못하여 제6조제3항에 따라 기간이 정하여진 때에는 그 연장된 기간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쳐야 한다.

② 위원회는 인사청문 요청안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마친 날부터 3일 이내에 심사경과보고서 또는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

③ 위원회가 정당한 이유없이 제1항 및 제2항의 기간내에 불구하고 인사청문 요청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의장은 이를 바로 본회의에 부의 할 수 있다.

제11조(경과보고서) ① 위원회가 제9조제2항에 따라 시의회 의장에게 제출하는 보고서에는 심사경과 또는 인사청문경과를 기재하고 관련된 중요 증거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보고서가 제출된 때에는 본회의에서 의제가 되기 전에 인쇄하여 의원에게 배부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때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제12조(위원장의 보고) 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사 또는 인사청문을 마친 인사청문 요청안에 대한 위원회의 심사경과 또는 인사청문경과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② 의장은 인사청문경과가 본회의에 보고되면 지체없이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시장에게 송부 하여야 한다. 다만, 인사청문을 마친 후 폐회 또는 휴회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장이 인사청문경과를 본회의에 보고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은 이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13조(자료제출요구) ① 위원회는 그 의결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인사청문대상자의 심사 및 인사청문과 직접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기관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기관은 제2항에 따라 기간 이내에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제출된 사유서를 심사경과보고서 또는 인사청문경과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기관이 정당한 사유없이 제2항에 따라 기간 이내에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해당 기관에 이를 경고할 수 있다.

제14조(검증) 위원회는 인사청문대상자의 인사청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의결로 검증을 행할 수 있다.

제15조(인사청문회의 공개) 인사청문회는 공개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군사·외교 등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개인의 명예나 사생활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3. 기업 및 개인의 적법한 금융 또는 상거래 등에 관한 정보가 누설될 우려가 있는 경우
4. 계속(繫屬)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누설될 우려가 명백한 경우
5. 그 밖에 다른 법령에 의해 비밀이 유지되어야 하는 경우로서 비공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6조(인사청문대상자 등의 보호) 위원회에 출석한 인사청문대상자 · 증인 · 참고인 등이 답변을 하거나 증언 등을 함에 있어서 특별한 이유로 인사청문회의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인사청문회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비공개 이유는 비공개회의에서 소명하여야 한다.

제17조(답변 등의 거부) ① 인사청문대상자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답변 또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

② 인사청문대상자는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 답변 또는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거부이유는 소명하여야 한다.

③ 인사청문대상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답변 또는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허위의 답변 또는 자료를 제출한 경우 위원회는 의결로 임명 철회를 건의할 수 있다.

제18조(과태료 부과) ① 인사청문을 위하여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은 경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과태료는 의장의 통보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 또는 서울특별시교육감이 부과하고 그 결과를 지체없이 의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19조(제척과 회피) ① 위원은 인사청문대상자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인사청문대상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회는 제척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결로 당해 위원의 인사청문회 참여를 배제하고 다른 위원으로 개선(改選)하여 심사는 인사청문을 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사유가 있는 위원은 위원장에게 회피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피 신청을 받은 위원장은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회피를 허가할 수 있다.

제20조(주의의무) ① 위원은 허위사실임을 알고 있음에도 진실인 것을 전제로 하여 발언하거나 위협적 또는 모욕적인 발언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위원 및 사무보조자는 인사청문 요청안의 심사 또는 인사청문을 통하여 알게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1조(준용규정) 위원회의 구성·운영과 인사청문회의 절차 등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3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